조선왕릉 조경 보존 · 관리 지침

[시행 2016.5.17] [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6호, 2016.5.17, 일부개정]

조선왕릉관리소(전통조경팀) 02 - 3700 - 18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선왕릉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선왕릉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선 시대의 능, 원, 묘(이하, ‘ 조선왕릉 ’ 이라 한다.) 지역 내 경관 요소인 역사경관림, 초본류, 능원 구성물, 관람 환경 시설물 등의 보존 ·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 법규와 규정) ①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0조에 근거한다.

② 적용되는 법규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관련 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이 있다.
2. 그 밖의 관련 법으로는 산림보호법령,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산지관리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으로는 문화재청의 조경관리규정이 있다.

③ 2항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조선왕릉 ’ 이란 조선 시대 능과 원, 묘를 포함한다.
2. ‘ 조경 ’ 은 조선왕릉을 구성하는 요소 중 역사경관림, 초본류, 능원 구성물, 관람 환경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 역사경관림 ’ 은 조선시대에 능역을 조성하여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을 심고 가꾸어온 숲을 말한다.
4. ‘ 능역 배경숲 ’ 은 봉분 주변으로 소나무를 심어 가꾼 곳을 말한다.
5. ‘ 방화선(화소, 火巢) ’ 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능, 원, 묘의 경계 지역 주변의 나무, 풀, 낙엽 등을 일정한 너비로 제거한 곳을 말한다.
6. ‘ 능원 구성물 ’ 은 봉분, 곡장, 석조물(난간석, 병풍석, 문인석, 무인석, 장명등, 망주석, 산신석, 석양, 석호, 석마, 예감 등), 향 · 어로, 연지, 수계, 금천교를 말한다.
7. ‘ 관람 환경 시설물 ’ 은 안내시설, 관람로, 편의시설, 경계울타리를 말한다.
8. ‘ 편의시설 ’ 은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이 왕릉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편의 시설물로는 휴게의자, 음수대, 분류배출함, 가로등, 자전거 보관대 등이 있으며, 기타 시설물로는 볼라드, 통제 시설물 등이 있다.

9. ‘ 중요 수목 ’ 은 왕릉 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수목, 거목, 노거수, 유래가 있는 나무 등, 중요한 나무를 말한다.

제2장 역사경관림과 초본류 보존 · 관리

제5조(능역 배경숲) ① 능역 배경숲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소나무로 조성하고 배경숲의 범위는 폭 100m 안으로 하되 경계는 지형과 기존 수림대를 고려하여 정한다.
2. 능침 주변 식생 접근 한계선(10m 이상)을 지정하여 능원 구성물과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심는다.
3. 변화된 배경숲은 주기적으로 소나무로 수종을 바꾼다. 다만, 일시에 수종을 바꾸는 면적이 넓을 경우 생태계의 교란과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4.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나무가 없어진 경우 후계목을 심는다.

② 능역 배경숲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눈이나 바람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고사한 가지, 속 가지를 정리하고, 능역으로 기울어져 있는 수목은 지주목을 설치하여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다.
2. 능역으로 과도하게 뻗은 수목의 가지는 잔디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나무 모양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한다.

제6조(경관림) ① 경관림을 구성하는 수목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1. 수목은 ‘ 별표 1 ’ 의 일정표에 따라 제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나무를 심거나 벨 때에는 문화재청 「조경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관람 공간의 죽은 가지는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주요 수목의 병충해는 ‘ 별표 2 ’ 의 진단을 통해 증상을 보이면 확산되기 전에 방제한다.
5. 중요 수목은 개체별로 중점 관리하되, 천연기념물 지정 수목은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과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을 따른다.
6. 수목에 피해를 주는 칡 등 덩굴류는 없앤다.

② 전통 수종 보호를 위해 외래 수목은 점진적으로 없앤다.

1. 제거 대상 외래 수목은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나무, 양버즘나무, 홍단풍나무 등이다.
2. 제거 전 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수종과 규격을 조사한 후 벌채 허가를 얻는다.
3. 가능한 전해 10월 ~ 12월 제거하고 다음 해 3월 ~ 4월 전통 수목을 심는다.
4. 전통 수목을 대단위로 심었을 때는 심은 후 5년 이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곧은 생장을 돕는다.
5. 움이 왕성하게 트는 나무는 움을 계속 관리하거나 약을 써서 고사시킨다.

③ 화재 발생과 확산에 대비하여 방화선을 설치한다.

1. 대상지는 능역 조성 근처, 관람로, 순찰로, 내부 · 외부 경계 지역으로 한다.
2. 구역별로 5 ~ 30m 정도의 폭을 선정하되,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3. 9월 ~ 10월에 설치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낙엽이 지는 대로 낙엽을 긁어내어 방화선을 정비한다.
4. 방화선 구축 시 제거한 임산물은 방화선 바깥 지역으로 옮긴다.

④ 경관림 보호와 관람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1. 임산물,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제한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봄가을에는 순찰과 안내를 강화한다.
2. 공개가 제한되는 곳은 통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⑤ 능역 아랫부분에 위치한 습지의 주요 수종인 물오리나무 등은 주변 생태환경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지형을 변경하거나 하층식생을 제거하지 않는다.

제7조(초본류) ① 잔디의 일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능원 공간에는 한국잔디 일명 들잔디를 심는다.
2. 연간 관리 일정과 병충해의 진단은 ‘별표 3’에 따라 제때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잔디는 4월 중순 이후부터 9월까지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깎는다.
4. 잔디의 잡초 제거는 제때에 약제 사용과 인력 제초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단, 약제는 필요한 만큼만 쓴다.
5. 잔디가 그늘, 병충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에는 새순이 나기 전인 3월 4월에 가급적 교체한다.

② 초본류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1. 관리하는 지역(야생화 군락지, 화단 등)에는 목적 외의 식물이 잠식하지 못하도록 목적 외의 식물을 제거한다.
2. 다양한 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방화선 지역 등 꼭 필요한 곳만 밑풀깎기를 한다.

③ 전통 식생을 교란하는 외래 초본은 없앤다.

1. 주요 외래 초본에는 서양등골나물, 미국자리공,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등이 있다.
2. 외래 초본은 ‘별표 4’에 따라 제때에 없앤다.

제3장 능원 구성물 보존·관리

제8조(봉분) ① 봉분은 형태 유지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1. 야생동물의 가해,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발견 시 보수한다.
2. 7월 ~ 9월 집중 호우기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봉분덮개를 설치하여 봉분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봉분덮개 설치 시, 잔디의 표면이 미끄러우므로 작업자 안전에 유의한다.
4. 봉분덮개는 잔디가 열기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가 그치면 벗겨준다.

② 봉분의 잔디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해빙기(3월)에 잔디가 들떠 올라오면 습기가 마르기 전에 두드려 다져 준다. 흙이 유실된 경우에는 점성이 있는 흙을 채운 후 다져 준다.
2. 잔디 교체 시, 기존 잔디와 흙을 걷어내고 원래의 높이에 맞춰 심어, 지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9조(곡장) 곡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기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곡장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기와 틈에 자라는 초본류, 이끼 등을 없앤다.

3. 배부름과 줄눈 탈락 여부를 점검하여 보수 · 정비한다.

제10조(석조물) 석조물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받침석이 있는 석조물은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2. 지반 침하 등으로 이탈되거나 기울어진 경우 드잡이를 시행한다.
3. 난간석, 병풍석 등 연결 석조물은 틈이 벌어진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훼손이 우려되면 조치한다.

제11조(향 · 어로) 향 · 어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향 · 어로는 박석이 깔려 있는 곳으로, 돌의 고임이 느슨해질 경우 안전사고가 나고 박석이 깨질 수 있으므로 바로 보완한다.
2. 박석 사이에 잔디나 풀, 이끼가 자랄 경우, 제초작업을 한다.

제12조(연지) ① 연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형태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연지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2. 물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입수구, 출수구를 점검하여 수시로 낙엽 등의 부유물을 걷어준다.
3. 연지에 연꽃 등 수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매년 인위적으로 개체 수량을 조절한다.
4. 토사, 낙엽 등이 연지 바닥을 메운 경우에는 준설작업을 하여 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겨울철에는 썰매타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통제 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제13조(수계) ① 물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흙이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고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과 도랑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유의하여 관리한다.

② 수계의 둑이 유실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둑이 유실되면 토사 유실이 가속화 되어 지형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비한다.
2. 정비 시에는 가능한 원 지형과 재료를 유지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나무, 돌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3. 바닥이 지속적으로 유실되는 경우에는 돌 등으로 낙차공을 설치하여 더 이상 유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14조(금천교) ① 기단이 침하되고 석재가 이탈되었을 경우 드잡이를 시행한다.

② 공사 차량, 장비의 통행으로 다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 불가피할 경우 보강 작업을 한다.

제4장 관람 환경 시설물 관리

제15조(안내시설) ① 안내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1. 안내시설은 최소한의 수량으로 안내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형태는 「세계문화유산 등 주요 기념지 공공디자인 개발 - 현충사, 왕릉」(2008. 3.),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2009. 12.),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2호)」을 따른다.
3.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영문 표기는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2013. 1.)을 따른다.
4. 안내문안 작성 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2호)」의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내용을 확정하고 국문 감수를 받는다. 영문 번역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다.

② 왕릉의 여건상 흙다짐으로 포장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시설 표면을 수시로 점검하여 깨끗이 관리하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는다.

제16조(관람로) ① 관람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1. 관람로는 대부분 흙다짐 포장이므로 비가 올 때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람로의 중앙을 좌 · 우 보다 약간 높게 조성한다.
2. 관람로 좌 · 우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이 잘 빠지게 한다.
3. 유실이 심한 곳에 흙을 보충하되, 관람로가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4. 비질의 방향에 따라 배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의 고임을 고려하여 청소한다.
5. 관람로의 잡초는 바로 없애고, 관람로에 낙엽 등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6. 해빙기(3월)에는 언 관람로가 녹으면서 질퍽거릴 수 있으므로 마사토 보충하기 또는 부직포, 야자매트 깔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7. 겨울철(12월 3월)에는 눈이 내리는 즉시 쓸어 내어 얼어붙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경관림 산책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1. 대부분이 자연 흙길이고 경사져 호우 시 흙이 많이 유실되는 지역이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물길을 만들어주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경관림 산책로의 경우, 태풍, 폭설, 폭우 등의 자연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상황에 맞게 관람객을 통제하고 안내문안을 게시한다.

제17조(편의시설) ① 편의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수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다.
2. 편의시설은「궁 · 능 · 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사업연구」(2009. 8.),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12.), 「세계문화유산 등 주요 기념지 공공디자인 개발 - 현충사, 왕릉」(2008. 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62호, 2016. 3. 28)」에 따라 설치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은 「궁 · 능 · 유적기관 장애인편의증진 개선사업연구」와 ‘ 별표 5 ’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보완한다.

② 편의시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1. 휴게의자는 관람객이 앉는 공간이므로 깨끗하도록 자주 청소한다.
2. 음수대는 관람객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물로 매년 수질을 점검하여 수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람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3. 분류배출함은 쓰레기 분류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변을 청결히 관리한다.

제18조(경계울타리) ① 경계울타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1. 경계울타리 설치 대상 지역을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변 등의 경관관리지역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출입통제지역으로 구분한다.
2. 「조선왕릉 경계울타리 기본설계 기본계획 보고서」(2008. 12.)의 경관관리지역, 출입통제지역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형, 지세,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정비 구간이 넓은 곳은 예산 상황에 맞게 구간별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② 경관림 지역의 경계울타리나 민가와 인접한 곳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구간을 고쳐 문화재를 보호한다.

제5장 조사 · 점검과 기록부 작성

제19조(조사 · 점검) ① 지구관리소장은 조경 관리를 위한 조사 ·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산불 조심 기간에는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 별지 제10호 ’ 의 서식에 따라 화재(산불) 예방을 점검한다.
2. 해빙기(2월 ~ 4월)에는 ‘ 별표 제6호 ’ 의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3. 장마 전(5월 ~ 6월)에는 ‘ 별표 제7호 ’ 의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4. 수목과 잔디에 병해가 나타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 별표 제8호 ’ 의 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
5. 농약 사용 시에는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 별지 제2호 ’ 의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② 지구관리소장은 조사 · 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직영 보수단, 문화재 보수 · 정비(공사 발주) 대상에 대하여는 조선왕릉관리소장과 협의하는 등 적절히 조치한다.

③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조경 보존 ·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지구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제20조(기록부 작성 · 관리) 지구관리소장은 기록부 작성 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중요 수목은 ‘ 별표 제9호 ’ 의 서식에 따른다.
2. 석조물은 ‘ 별표 제10호 ’ 의 서식에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6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